

의안번호	제 14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제 회)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4 . 24 .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년월일 : 2000. 4. 24.

제출자 : 서산시장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0. 3. 13일 1국 1과를 증설할 수 있는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1국 1과를 신설하고,
-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배치하여 행정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산업건설국을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신설함(안 제3조 및 6조의2).
-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사회산업국에 사회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해양과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둠(안 제5조 내지 6조의2).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 기구조정 현황

구 분	국	담당관	과	담당	비고
현 행	2	2	14	71	
조정후	3	2	15	73	
증 감	+1	·	+1	+2	

《 1국 1과 신설 》

○ 국 : 현행(2국) : 행정지원국, 산업건설국

조정(3국) :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 과 : 현행 14과 → 조정 15과

- 행정지원국(5과) :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민방위재난관리과
- 사회산업국(5과) : 사회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해양과
- 건설도시국(5과) :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 도시과 및 건축과 분리·신설 사유 〉

▷ 행정수요 및 현안사업 급증

- ① 2·3차 산업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도시 업무수요 증가

- 도시계획구역의 면적 및 인구
 - 면 적 : 193km²(1읍, 3면, 5동 - 행정구역 면적의 26%)
 - 인 구 : 10만여명(총인구의 67%)
- 현안사업
 - 도시분야 : 1,560개시설(사업비 1조5천억원)
 - 건축분야 : 건축중인 APT 17개업체(7,500여 세대)
사업계획승인업체 20개소(13,000여 세대)
- 개발육구증대에 따른 민원수요 증가
 - '98년도 : 37,471건(토지형질변경 66건, 건축허가·신고 199건,
도시계획확인원 35,458건, 진정 9건, 기타 1,739건)
 - '99년도 : 57,314건(토지형질변경 173건, 건축허가·신고 260건,
도시계획확인원 54,676건, 진정 40건, 기타 1,265건)

⇒ '98년대비 153%증가, 1일평균 처리건수 191건

② 구획정리사업등 도시단지화 주민수요 증가

-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성된 주택 및 상업단지 수요증대
 - ※ 동(洞) 및 대산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구획정리 개발지역
 - 중앙저수지·서동초등학교·서산중학교·의료원 부근
 - 대산주거지역 및 삼길포 항만개발지역 등
- 구획정리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여 열악한 시재정에 기여

③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도시행정수요 증가

- 현대정공, 한국항공우주산업 및 대산석유비축산업단지 등 대형 공단 입주에 따라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 대산항만 배후도시 건설등 현안사업 산재

④ 기타 사항

- 7,000여개의 가로·보안등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청구권 부여에 따라 1,560개시설(22km²)의 보상업무(3,000억원)처리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지원국 및 산업건설국”을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및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종합민원실,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종합민원실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5. 도의새마을 및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사회산업국에 사회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및 축산해양과를 둔다.

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여성·노인·아동복지 및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 보호, 지도·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공업진흥, 실업대책 및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6. 농업경제, 농지관리, 양정·유통특작 및 원예업무에 관한 사항
7. 산림식수 및 보호 등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
8.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 및 어업증식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2. 건설관리 및 시·군·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조성, 치수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 및 일반·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운수,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9.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②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사회산업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산업건설국장”을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⑤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건축과장”으로 한다.

⑥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동항제3호, 동항제5호, 동항제7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지원국 및 산업건설국을 둔다.</u></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u>종합민원실,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둔다.</u></p> <p>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내지 4. (생략)</p> <p>5. <u>도의 새마을운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u></p> <p>6. 내지 9. (생략)</p> <p>10. <u>지역경제, 공업진흥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u></p> <p>11. <u>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사항</u></p> <p>12. (생략)</p> <p>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산업</p>	<p>제3조(국의 설치) ----- ----- <u>행정지원국, 사회 산업국 및 건설도시국</u> -----</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u>종합민원실 및 민방위재난관리과</u>----- -----</p> <p>②----- -----</p> <p>1. 내지 4. (현행과 같음)</p> <p>5. <u>도의새마을 및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u></p> <p>6. 내지 9. (생략)</p> <p><삭 제></p> <p><삭 제></p> <p>12.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사회</p>

현 행	개 정 안
<p>건설국에 농림과, 축산해양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행정과를 둔다.</p>	<p>산업국에 사회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및 축산해양과를 둔다.</p>
<p>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p>	<p>1. 국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p>
<p>2. 농업경제, 농지관리 및 양정·유통 특작에 관한 사항</p>	<p>2.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p>
<p>3. 산림식수 및 보호등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p>	<p>3. 사회·여성·노인·아동복지 및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p>
<p>4. 축산 및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p>	<p>4. 환경의 보전, 보호, 지도·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p>
<p>5. 환경의 보전, 보호, 지도·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p>	<p>5. 지역경제, 공업진흥, 실업대책 및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p>
<p>6.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시·군·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p>	<p>6. 농업경제, 농지관리, 양정·유통 특작 및 원예업무에 관한 사항</p>
<p>7. 농업기반조성, 치수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p>	<p>7. 산림식수 및 보호등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p>
<p>8. 도시계획·개발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p>	<p>8.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p>
<p>9.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p>	<p>9. 해양수산 및 어업증식에 관한 사항</p>
<p>10. 교통행정, 운수 및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p> <p>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관리 및 시·군·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조성, 치수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 및 일반·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운수,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9.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다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p>제4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p> <p>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u>산업건설국장</u>·대한노인회서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 ⑤ (생략)</p>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p>제4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u>사회산업국장</u>·건설도시국장</p> <p>-----</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p> <p>제2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 <u>산업건설국장</u>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p> <p>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u>사회산업국장 및 건설도시국장</u>-----</p> <p>-----</p> <p>-----</p> <p>-----</p>
<p>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p> <p>제19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 <u>산업건설국장</u>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경제계·</p>	<p>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p> <p>제1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u>사회</u></p> <p><u>산업국장 및 건설도시국장</u>-----</p> <p>-----</p>

현행	개정안
<p>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 유통단체 대표, 주민대표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생략)</p>	<p>----- ----- -----</p> <p>④ (현행과 같음)</p>
<p>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제3조(시관리 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생략)</p> <p>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산업건설국장</u>으로 하며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서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제3조(시관리 방조제심의회의 구성)</p> <p>-----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건설도시국장</u>----- ----- ----- ----- -----</p>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제3조(조직 및 임기)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u>산업건설국장</u>이 된다.</p> <p>③ (생략)</p>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제3조(조직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u>건설도시국장</u>-----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지적과장·농림과장·건설과장·<u>도시건축과장</u>·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p> <p>⑤ (생 략)</p>	<p>④----- -----<u>도시과장</u>· <u>건축과장</u>-----</p> <p>⑤ (현행과 같음)</p>
<p>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1. 징수관 - <u>산업건설국장</u></p> <p>2. (생 략)</p> <p>3. 경리관 - <u>산업건설국장</u></p> <p>4. (생 략)</p> <p>5. 총괄채권과리관 - <u>산업건설국장</u></p> <p>6. (생 략)</p> <p>7. 총괄채무관리관 - <u>산업건설국장</u></p> <p>8. ~ 13. (생 략)</p>	<p>서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 ----- -----</p> <p>1. ----- <u>건설도시국장</u></p> <p>2. (현행과 같음)</p> <p>3. ----- <u>건설도시국장</u></p> <p>4. (현행과 같음)</p> <p>5. ----- <u>건설도시국장</u></p> <p>6. (현행과 같음)</p> <p>7. ----- <u>건설도시국장</u></p> <p>8. ~ 13. (현행과 같음)</p>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7.2.4>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제5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②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 [시·도는 5급 4인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인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4]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인구 10만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16개 이내
	인구 10만이상 15만미만	2개 이내	16개 이내
	인구 15만이상 20만미만	3개 이내	17개 이내
	인구 20만이상 30만미만	4개 이내	20개 이내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	5개 이내	22개 이내
	인구 50만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6개 이내	25개 이내
	인구 50만이상 70만미만 (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19개 이내
	인구 70만이상(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22개 이내

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보좌기관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구분	실장(국장급)· 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 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인구 3만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 ①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